

제 호

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

1. 명 칭:
2. 대 표 자: (생년월일:)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
4. 지정업무의 범위: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업

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